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등문자유연대

▲ 秦县 X 章 (11)

1. 개요

- 1. 제작 배경 및 필요성
- 2. 동물학대의 개념 및 유형

Ⅱ. 동물학대 관련 법조항 및 발생 시 대응방법

- 1. 동물학대 사건 처리 프로세스
- 2. 사건 단계별 대응
 - 3. 학대 유형별 대응사례

Ⅲ.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의 활용

1.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 동물자유연디

2. 동물학대 사건 모니터링

A 등문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u>▲</u> 돗용자유연대

. 등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u> 동물자</u>유연대

. 1 등문자유연대

A 등용자유인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매뉴얼 p3~p6 동물학대의 개념,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관련 조항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 매뉴얼 p14~p15 동물학대 여부 판단, p35~p36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신체적 학대

- 동물에게 부상,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CCTV나 이웃, 친지 등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견이 어려워요
- 학대 후 가해자의 행동, 학대 정황 등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설명, 동물의 반복된 부상 등
- 예시: 발로 차기, 던지기, 도구를 이용한 폭행, 목 조르기,중독성 물질 급여 등



성적 학대

- 성기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성적 도구로 학대하는 행위
- 성기, 항문 등에 대한 성적 행위 또는 위해에 따른 주변부 상처, 손상 등이 있어요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방임, 방치

- 사료와 물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 질병,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 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애니멀 호딩
- 예시: 좁은 공간에 과밀한 사육, 배설물·오물·사체 등을 방치 등



유기

- 보호소 앞, 거리 등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학대 현장 제보 및 신고 절차



동물학대 현장 발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방치, 유기



동물학대 여부 판단

→ **매뉴얼 p35~p36**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확인!



증거 수집

- → 매뉴얼 p16~p17 신고 및 증거수집, p39 현장 확인 및 증거 수집
- 사진 및 동영상, 녹취파일, 사체 보존 등

04

① **경찰서 :** 국번없이 112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청 및 구청 / 국번없이 120

③ **동물보호단체 :** 동물자유연대 02-2292-6337

신고 및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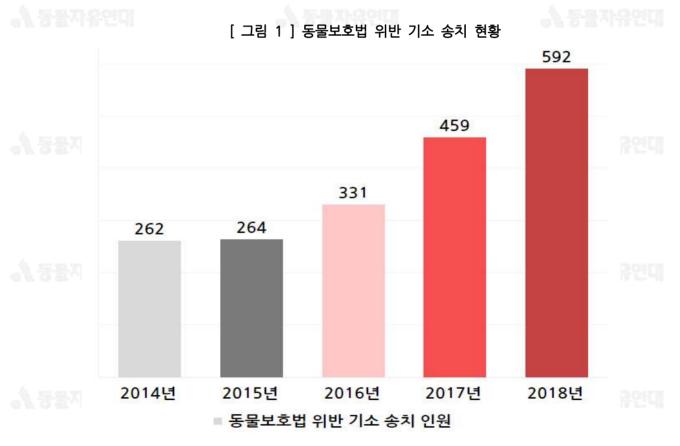
L

개요

1. 제작 배경 및 필요성

A. 동물학대 사건 증가 및 유형 다양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구 천 만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반려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 또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유형도 더욱 다양, 잔혹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이 경찰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국 262명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인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8년 592명으로 지난 5년 사이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의 2019년 동물학대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가 전체 600 건 중 230건으로 가장 많은 제보 접수를 차지했다.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에 노출된 사례도 존재했지만 대체로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많았다. 신체적 학대 로 대표되는 물리적 학대가 전체 32%로 뒤를 이었고, 방임과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 유기 순으로 제보가 이어져 매우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 동물자유연대

[그림 2] 2019년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 현황



B. 동물학대 사건의 어려움과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동물학대 사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학대임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의 다음과 같은 특징1)에 기인한다.

-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정황증거에 의존한다.
- 피해 당사자(피학대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하다.
-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보호(소유)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 피학대 동물의 격리 시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 동물이 증거이며, 시간의 경과(치유됨)에 따라 학대 증거가 자연 소멸된다.

¹⁾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중 동물학대 조사에 있어 제약 요소를 재편집(The Governor's Commission on th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2012). Animal Cruelt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 User Manual for New Hampshire Law Enforcement p.48)

등문자유연대 ... 등문자유연



- 법수의학적 전문가가 부재하다. (상해 혹은 죽음과 학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움)
- 청소년과 호더의 경우 실효성 있는 판결에 제한이 있다.

반면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공무원만으로 모든 학대 행위를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반 시민에 의해 사건이 목격되더라도 시민들이 학대 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동물학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대응이 지연되고, 학대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일선 대응 주체인 경찰 및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와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체계적인 동물학대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학대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판단기준과 구체적 대처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수사당국, 법조인, 수의사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모니터링 - 사건 신고 및 처리 - 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있어 단계별 증거 확보와 판단기준, 대응방안, 프로세스 등이 담겨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를 통해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동물학대의 개념 및 유형

A. 동물학대의 개념

동물학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동물학대의 광의의 개념으로 로 버트 애그뉴(Robert Agnew, 1998)는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해 동물학대를 '동물의 고통 또는 죽음에 기여하거나 동물의 복지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했다. 애그뉴의 정의에 의하면 동물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즉 공장식 축산 및 동물실험 등도 동물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불법행위만을 한정하지 않아 현행법상 범죄가 아닌 행위 역시도 포함된다.

반면 아시온(Ascione, 1993)은 동물학대의 판단에 있어 행동의 의도성 여부, 불가피성 여부, 사회적용인 여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고통 그리고/또는 죽음을 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방치 또한 동물학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의도성이 있을 때만 해당되며, 법적·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들, 즉 공장식축산, 동물실험, 사냥 등은 동물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²) 이는 동물학대의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학대의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동물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자리갑아가면서 동물싸움, 비인도적인 도축방법 등 과거에는 학대로 보지 않던 행위들 역시도 현재는 학대로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²⁾ 클리프턴 P. 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18, p101~102 / p115~116

본 매뉴얼은 동물학대 범위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동물학대 발생 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 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 리,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의2).

B. 동물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a. 개념 : 동물들에게 부상, 상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b. 특징
- CCTV나 이웃, 친지 등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견되기 어려움
 - 학대 후 가해자의 행동, 학대 정황 등에 의해 유추: 가해자의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설명, 동물의 반복된 부상 등

행동 예시

- 발로 차기
- 주먹으로 때리기
- 던지기
- 도구를 이용한 폭행
- 칼로 찌르기

- 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 등을 뿌리기
- 물에 담그거나 목 조르기
- 전자레인지, 빨래건조기, 세탁기 등에 넣고 작동 시키기
- 중독성 물질 급여

(2) 성적 학대

- a. 개념 : 성기 또는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성적 도구로 학대
 - b. 특징
 - 성기, 직장, 항문 등에 대한 성적 행위 또는 위해에 따른 주변부 상처, 상해 등 발생
 - 어려서부터 그루밍 가능성 존재



실제 사례

-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2019년 5월 16일 저녁, 경기도 이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3개 월령의 진돗개 강아지에 수간을 시도한 사건

- 유튜버 A의 동물학대

2019년 10월 8일, 유튜버 A씨가 고양이의 성기를 문지르며 '수간을 왜 하는지 알 것 같 다'고 말하는 등 본인의 반려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

(3) 방임 및 유기, 정서적 학대

a. 물리적 방임 : 사료와 물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음

b. 의료적 방임 :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수의학적 처치조차 제공하지 않음

c. 애니멀 호딩 : 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적절한 책 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

행동 예시

- 사료와 식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염된 발톱 등을 관리하지 않아 살을 파고들 상태로 제공
- 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사육
- 때까지 방치
- 질병이나 상해의 발생에도 최소한의 수 - 배설물, 오물, 사체 등을 방치 의학적 처치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1 등표자유연대

C.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관련 조항

(1) 동물의 정의3)

[표 1]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정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 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2조]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동물학대의 정의

[표 2]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정의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동물학대의 유형

a.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³⁾ 가재, 오징어, 낙지와 같은 무척추 동물과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물고기 등은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처벌을 하지 못 한다.



[표3]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료자유연대 · ▲ 동료자	유언대 🕹 동품자유언대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조 학대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이르게 하는 행위	no 하나를 말한다.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
이르게 하는 행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	르게 하는 행위
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
행위	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u>농림</u>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연대 소등문자유연대

b.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표4]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표4] 경에를 합이기나 전세식 고공을 구는 행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 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 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	[제4조 학대행위의 금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제외하다.
-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 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 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 키는 행위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 한다. [신설 2018.9.21]
 -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 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는 별표 1의2와 같다.
 -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 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 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 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 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 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of 용발자유면내

동묵보호법 시행규칙

c.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표 5]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묵보호번

(4) 구조 및 보호조치

[표 6] 동물의 구조·보호

중골모오립	공물모오십 시앵뀨식
5합시장인내 6월 3 합시	유민대 61 강경시장인대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4조 보호조치 기간]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	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	
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	A FRANCISCO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유연대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	
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길고양이)	A E STAGOS
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연대 사동물자유연대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	
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	
되는 동물	A management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유연대 교 동교자유인대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	

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 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 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19조 보호비용의 부담]

-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 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 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 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 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 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제21조 보호비용의 납부]

-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 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 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 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 야 하다.
 -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 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 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다.

유연대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
	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
	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 동표자유연대

🎝 동표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A 동표자유연대

A 통용자유연대

. 1 동표자왕연대

🎝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A FRIARU

A SHIPPH

Ш

동물학대 관련 법조항 및 발생 시 대응방법

. 1 등문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동됐자유연대

1. 동물학대 사건 처리 프로세스

동물학대 목격 시 사건의 제보 또는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물보호업무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에 할 수 있다.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경찰 및 동물보호담당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의 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목격자 또는 지자체가 경찰(또는 검찰)에 고소·고발4이 가능하며, 동물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 법원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를 맡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여부와 형을 결정한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과의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한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는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할 경우 기소 제기를 하는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형을 과하는 약식기소를 하거나 기소 자체를 유예할 수도 있다.5)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유·무죄를 가리며 유죄인 경우 죄에 따른 형을 정하고, 검찰은 이를 집행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검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기일 내 상소할수 있다. 상소에 대한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각하, 제1심 판결에 문제가 없을 때는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인용을 하며, 인용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상소심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1 등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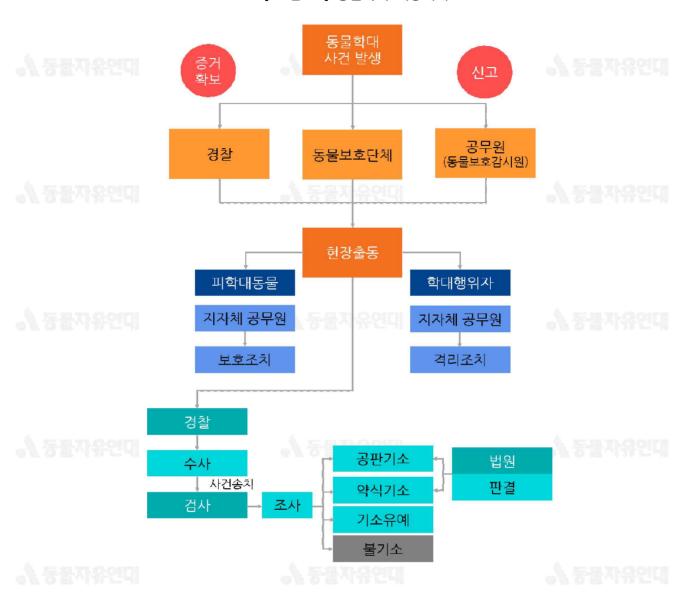
A 뜻용자유연대

⁴⁾ 고소는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보호자인 B는 A를 고소할 수있으며, C가 자신의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D는 C를 고발할 수 있다.

⁵⁾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하여,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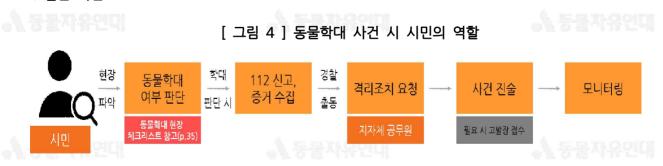


[그림 3] 동물학대 대응체계



2. 사건 단계별 대응

A. 일반 시민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건 대응의 일선 주체인 경찰과 전담 공무원만으로 모든 동물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와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1) 동물학대 여부 판단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파악이다. 처음 마주한 상황에 많이 당황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이 동물학대 상황이 맞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육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없고 소리만으로 학대를 추측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지, 비명 또는 신음 등 동물의 소리만 들린다면 단순히분리불안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은 아닌지 주의 깊게 듣고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래 표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돕고자 작성되었다. 학대 정황 및 징후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표7] 학대 정황 및 징후에 따른 벌칙 규정 (2020년 4월 기준)

학대.	유형	학대 정황 및 징후	벌칙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물자유	살해	- 사체에 나타난 상해 흔적 - 독극물 섞인 토사물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2021년 2월 12일 시행예정
신체적 학대	상해	- 반복된 부상: 여러 군데의 부상, 발생(회복)시기 다른 복수의 부상 및 뼈의 다중 골절 발견 -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 둔감 - 갑작스러운 지능 저하 및 건강 악화 - 정서적/지능 발달 부족 -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주인과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 - 주인이 없으면 즐겁거나 행복한 표정과 행동/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불안한 모습 -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짐 - 극도의 식탐, 지나친 배설 자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방임/방치	 불충분한 음식, 신선한 식수 부족 과도한 밀집 상태 더럽고 배설물 쌓인 사육 공간 날씨와 시간에 적합한 충분하고 적정한 대피 공간의 부족 사육장 바닥이 없고 메쉬 와이어만 존재, 사육장을 쌓으면 배설물이 동물 아래로 떨어짐. 사육장 부실 및 와이어 돌출 등 발톱이 길어 살을 파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방치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 복부 팽창, 피부병이 의심되는 과도한 가려움증 및 탈모 등에도 적절한 치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 등문자유연대	A 동물자유연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기	- 보호소 앞, 거리 등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	*300만원 이하 벌금 전환: 2021년 2월 12일 시행예정
성적학대	- 항문, 직장 또는 외음부, 질 부위의 외상성 손상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의 행동 징후 - 탈모, 직장이나 질 등 회음부 주변 찰과상이나 찢어 진 상처 - 복막염 (복부 안의 염증) - 항문, 유두 또는 생식기 손상 - 재발성 질염, 직장염 또는 비뇨기 감염 - X-ray 상 자궁, 질 내부의 가스 음영 - 동물의 비일반적인 온순함 - 배뇨 생식기관 내 이물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 등표자유연대	· N 등표자유연대	<u>. 등표자유연대</u>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건의 신고의무자

제16조(신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피학대 동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2.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5.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 6.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 동물자유연대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2) 신고 및 증거 수집

증거 수집에 앞서 학대 행위자의 가해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피학대 동물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긴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경찰 및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속한 신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대자의 학대 행위를 막고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시 초동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동물은 법정에 서거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신고자(제보자)는 신고 전후로 동물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증인의 확보, 수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유의해야 한다.

a. 사진 및 동영상

현장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외에, 동물 학대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이다. 학대로 인한 동물의 피해(상해 또는 질병)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태가 나아지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물이 구조될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목격자가 있어 그 상황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할지라도 사진이나 영상만큼 상황을 전달할 수는 없다.

다만 동물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촬영하기를 권한다.



- 전체촬영 : 건물을 포함하여 범죄가 의심되는 위치의 일반적인 장면
- 중간 범위 샷 : 동물이 있던 위치와 동물 주변의 관련된 사물 또는 방치의 흔적(예 : 빈 사료와 물그릇, 지나지게 짧은 목줄, 더럽고 비위생적인 사육 공간 등)
 - 클로즈업 : 동물 사진 등

동물 사진에는 동물의 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우, 전후, 상하에서 병변, 상해의 흔적 등 동물의 신체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야 한다. 특히 부상 부위는 현재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해야 한다. 부상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 또 는 길이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물체를 동일 선상에 두고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외국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에는 동물학대 현장에서 수사관 등이 농담 등으로 현장의 스 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웃고 있거나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거나 학대자의 심각한 표정과 대조를 이루어 판 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진과 영상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강력한 증거인만큼 신중하게 촬영할 필요가 있다.

b. 사체 부검 및 보관

이미 피학대 동물이 사망했거나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이 추측되는 경우에는 사체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게 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동물학대에 의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수의학자가 존재해 동물의 사망 시법수의학에 근거한 부검이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국내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재로 법수의학 개념의 부검은 불가한 실정이나,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에 질병 진단 및 병성감정 등 일반 병리 부검의 의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부검 전 X-ray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살서제, 농약 중독 등의 판단도 가능한 추세로, 수의학적 소견이 담긴 부검결과서는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검 의뢰 시 동물 사체의 냉동 보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부검 결과를 위해 냉장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사체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하되, 사체를 털거나 씻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격리조치 요청

보호자(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일 이상 학대 행위자인 동물의 보호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6)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수의사의 진단, 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비용을 고려하여 피학대 동물의 치료 · 보호비용을 청구해야 한다.⁷⁾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학대 행위자는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을 상실하게 된다.⁸⁾

(4) 사건 진술

경찰의 출동 및 현장 진술 등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찰 측에서 사건 목격자를 대상으로 임의동행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 · 고발장 접수가 가능하다.

동물학대 사건의 고소 · 고발을 원하는 일반 시민이 활용 가능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예 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000
주 소	00 000 00000 0000
전 화 <u>000-0000</u>	
이메일	<u>00000@000000000</u>

☞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상세히 기입한다.

- 6) 동물보호법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8)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3. 제14조제1항제3호(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발인

성 명	<u>000</u>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00 000 00000 0000		
직 업	<u>000000</u>		
전 화	000-0000		
이메일	<u>00000@000000.000</u>		
기타사항			

☞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미상'으로 기입한다.

3. 고발죄명

- 가. 동물보호법 위반
- ☞ 고발죄명을 기재하다. 재물손과 등 동물보호법 위반 외 위법하고 유책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추가 기술한다.

4. 범죄사실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게 하거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19. 〇〇. 〇〇. 오전 〇시 ○○분경 ○○○○ 인근에서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의 심각한 상해를 유발하였습니다.

- ☞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학대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기술한다.
- ☞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되 학대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5. 사건의 경위

고발인 ㅇㅇㅇ은 2019년 ㅇ월 ㅇ일 오전 ㅇ시 ㅇㅇ분경 ㅇㅇㅇㅇ 인근에서 피고발인 ○○○가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 지역 캣맘들이 물심양면 돌보던 길고양이로, ○월 ○일 오전 ○시 무렵 피고발인 ○○○은 ○○○○ 인근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고양이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척 하던 사이 갑자기 꼬리를 움켜쥐고 고양이를 들어 올렸고 쇠파이프로 잔인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캣맘으로서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아오던 고발인 ○○○ 본인은 다른 캣맘들과 함께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무언가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와 날카로운 동물의 비명 소리에 현장을 발견하게 됐고 피고발인이 한 손에는 고양이의 꼬리를, 다른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캣맘들과 마주친 피고발인은 인근 화단에 고양이를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피고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고양이를 진심 어리게 돌봐온 캣맘들이 지켜보고</u>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시민 및 캣맘들에게</u>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했습니다.

<u> 쇠파이프로 고양이를 수차례 내려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u>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한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u> 금지)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 ☞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한다.
- ☞ 학대자의 학대 행위가 해당되는 법 조항(동물보호법 제8조)과 처벌 조항(동물보호법 제46조)을 함께 기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u>피고발인은 2019.</u> ○. ○. 오전 ○시경 ○○○○ 인근에서 캣맘들이 지켜보는 앞에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위반으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고발인은 위 폭행 현장을 목격한 후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발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학대 행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다시 한 번 간단히 기술한 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7. 증거자료

- □ 증 제1호)
- □ 증 제2호)
- ☞ 폭행 현장, 학대 도구, 피학대 동물의 사진(동물의 상태 파악 가능한 사진) 등을 첨부한다.
- ☞ 동영상의 경우 USB 또는 CD에 자료를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020, 00, 00,

고발인 성명 (인)

○○경찰서 귀중

(5) 모니터링

시 등표자유연대

상황 종료 후 경찰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모니터 링 과정도 필요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고 또는 목격자가 사건 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요하다. 사건 진행 과정이나 결과 통보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기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각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A 동물자유연대

B. 지자체 전담 공무원 (동물보호감시원⁹⁾)

[그림 5] 동물학대 사건 시 공무원의 역할



동물보호감시원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 ·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등 사건 대응 과정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대자가 현장 출입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¹⁰⁾

한 생명의 생사가 달린 동물학대 사건에서 전담 공무원은 사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본인의 역할 및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물학대 여부가 사실로 판단되면 대응 과정은 더욱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각 대응 단계를 동시 진행할 수 있다.

(1) 출입·검사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동물학대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 학대 여부의 판단과 피학대 동물의 피해 상태 파악, 구호를 위하여 즉시 사건 현장에 출동함이 옳다.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 출입해야 한다. 일반 시민의 경우 보호자의 주거지 등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 침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 즉 동물보호감시원에게는 현장에 출입 · 검사할 권한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⁹⁾ 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¹⁰⁾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동법 제39조 제3항의 '출입 · 검사를 할 때는 출입 ·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입 · 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하여 간혹 학대현장의 출입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만, 출입 · 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 · 감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 의심 현장의 불시 단속 및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2) 동물학대 여부 판단

학대 의심 현장 출입 후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은 신속하게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의 상태에 대한 일차적 확인 이 선행되는데, 학대의 정도가 심할 경우 신속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피해 사실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동물의 특성상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 감수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면밀하게 상황을 조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p.24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3) 증거 수집

증거 수집은 상황에 따라 전후 대응 단계에서 동시 진행할 수 있다. 학대현장, 가해 도구, 피학대 동물 및 환부 등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목격자 및 학대 행위자 인터뷰 등 동물학대 행위를 입증 할만한 다양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한다. 학대 종료 상황일 경우 목격자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가 존재할 경우 목격자로부터 증거를 전달받는 것이 좋다.

학대 행위자 대응 및 인터뷰 과정도 주로 이 단계에서 진행된다. 원활한 사건 대응을 위하여 학대 행위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학대 행위자를 다그치거나 흥분을 고조시키기보다 상대 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동물학대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바로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다.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

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 기간을 제시한다.

피학대 동물의 격리는 동물의 생사와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및 동물보호감시원의 문제 해결 의지나 태도에 따라 격리조치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치료 ·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6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 ·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동물의 구조, 보호에 있어 타법률보다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땅히 학대당한 동물의 편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이 방치 없이 신속하게 구조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은 그 보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5) 모니터링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의 역할 중 모니터링은 동물학대 사건 사후 처리 과정을 뜻한다. 보통 지자체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담 공무원은 단순 출동만 하는 수준으로, 이는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 처리 및 모니터링까지 해당 이슈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대응포럼 발제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학대 점검 건수는 437건이었던 반면 고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으며, 점검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지난 2018년 고발 건수는 오히려 0건으로 하락해11) 지자체 차원의 동물학대 사건 모니터링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지자체 및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은 동물학대 사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 및 자원 투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의 결함, 일탈, 가족 간 문제 등 동물학대 사건의 수많은 발생 요인에 대한 해결에는 복합적,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학대 행위자 개인 또는 그 가정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대 행위지를 향한 엄중한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대 조치 후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통해 동물학대 상황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복합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원인 해결은 단순히 동물만 격리하거나 학대 행위자만 처벌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¹¹⁾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8월 발제자료: 서울시 동물학대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https://www.animals.or.kr/campaign/policy/48985





3. 학대 유형별 대응사례

A. 신체적 학대: 서울 강동구 보담이 사건

(1) 피해동물: 보담 (푸들, 수컷, 5개월 추정)

(2) 학대 행위자: 피해동물 보호자

(3) 신고접수

2018년 추석 연휴 동물자유연대로 서울 강동구의 한 소재지에서 강아지를 학대한다는 제보 접수. 푸들로 추정되는 어린 강아지가 학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한 가정집 앞 탈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사진과 다수의 학대 영상을 확인. 학대 발생 후 하루가 지난 뒤 제보됐고 강아지의 생사 불투명한 상황에서 긴급 출동 결정.

(4) 현장조사

지자체 전담 공무원, 경찰 대동 아래 현장조사 진행. 현장 출동 시 이웃의 수많은 제보가 잇따름. 강아지가 머무는 주거지 출입이 시급한 상황이나 내부에 학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 도 반응이 없었고, *공무원 · 경찰 모두 출입 권한이 없다고 하여*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며 대치.

결국 학대자는 문을 열었고 다행히 강아지는 살아 있었으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는 상태. 학대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내려놓으니 현장 출동한 활동가들에게 기대 숨음. 병원 이송 및 진료 결과 좌측 앞다리, 양측 뒷다리 자세반응 저하 / 양측 안구 결막 출혈 /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 며칠 동안 음식, 물 섭취 못 해 영양실조 및 탈진 소견 보임.

(5) 동물학대 사항

지난 8월부터 몇 달 이상 지속적인 물리적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다수 이웃 주민이 밤낮 구분 없이 심하게 구타하는 학대자의 목소리와 강아지가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진술. 제보 영상 확인 결과 계단 위· 아래로 들어 던지거나 주먹,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장면 포착.

(6) 개입 과정

a. 동물자유연대: 치료 종료 후 반려동물복지센터 입소 결정 / 보호 및 입양 지원

b. 지자체: 주민센터, 구청 담당부서 연계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알콜 중독치료 등 정기적 모니터링 약속

(7) 사례종결

2018년 10월 31일 동물자유연대 입양 심사 과정을 거쳐 입양가족 확정. 입양전담 활동가를 통해

1년에 2회 이상 입양동물(보담) 근황 파악 중

[사진 1] 보담이 구조 전후 사진



B. 상습적 학대: 강동구 개 아사 사건

센터 입소

(1) 피해동물: 개 9마리 (추정)

(2) 학대 행위자: 피해동물 보호자

(3) 신고접수

a. 1차 사건: 2017년 5월, 보호자가 행방불명 되어 보호자가 운영하던 주점 건물주가 강동구청 에 신고하여 주점 내부에 있던 개들의 구조요청

입양 후

. 1 동물자유언대



- b. 2차 사건: 2017년 12월, 주점 건물주가 명도청구소송¹²⁾을 진행하여 소유자가 운영하던 주점에 방문하여 물건 등을 빼내는 과정에서 개들을 발견하여 경찰 신고 후 구청으로 구조요청
- c. 3차 사건: 2018년 6월, 원룸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방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개가 있는 것 같다고 제보하여 강동구청 동물구조 담당 공무원이 경찰 입회하에 현장방문

(4) 현장조사

- a. 1차 사건: 건물주 동의하에 경찰,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개 4마리(진도 1마리, 푸들 2마리, 혼혈견 1마리)를 구조하여 지자체 위탁 보호소(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이하 동구협)에 보호 조치함. 그러나 보호자가 나타나 강동구청에 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4마리 중 3마리는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나 1마리는 보호자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아 보호자 설득 후 별도 입양조치.
- b. 2차 사건: 닥스훈트 1마리 사체(탈수 및 영양실조로 사망 추정), 진도 1마리(목줄 조임으로 인한 피부 괴사), 푸들 2마리와 프렌치불독 1마리(개 옴 추정) 발견. 1차 사건보다 동물이 1마리 더 늘어남.
 - c. 3차 사건: 방 안에 각종 쓰레기와 물건이 쌓여있고 심한 악취와 파리가 들끓는 상황에서 비쩍 마른 어린 강아지(보더콜리, 4개월 추정) 1마리를 발견해 담당 공무원이 긴급구조 및 격리 조치했고 당시 다른 개들의 사체는 발견하지 못함. 다음 날 건물 임대인이 재연락해 악취가 계속되고 다른 동물 또는 동물 사체가 있는 것이 의심된다 하여 재방문 결과 화장실에서 개 사체를 발견. 담당 공무원과 수의사의 사체 검안 결과, 개 3~4마리의 사체로 추정되며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 '부패 진행으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음' 등의 소견을 밝힘.

(5) 동물학대 사항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 모두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1마리 이상 아사. 그밖에도 목줄 조임으로 인한 피부 괴사,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개 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함.

(6) 개입 과정

- a. 동물자유연대: 학대자 고발 및 목줄 조임으로 피부 괴사한 진도 1마리 보호(재순이)
 - b. 지자체: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발동

(7) 사례종결

동물자유연대 고발로 동물 보호자이자 학대자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처리. 당시 구조한 재순이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에서 보호 중.

¹²⁾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

동물자유언대 등물자유연대

[사진 2] 재순이 구조 전후 사진









병원 이송 센터 입소

C. 가정불화로 인한 학대: 신사동 햄스터 학대 살해사건

- (1) 피해동물: 햄스터 11마리
 - (2) 학대 행위자: 피해동물 보호자의 부(父)
 - (3) 신고접수
- 2017년 10월, 햄스터 보호자(제보자)가 동생과 싸우고 집을 나간 후 햄스터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키우던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의 목을 펜치로 절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보호자가 현장 확인 후 경찰 신고.



(4) 현장조사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 방문했고 경찰은 보호자에게 "햄스터는 재물이라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 괴죄에 해당하니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것인지" 질문.

(5) 동물학대 사항

증거 영상 확인 결과 학대자는 웃으며 살아있는 햄스터를 한 마리씩 잡아 펜치로 목을 절단하여 죽 였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목을 자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종의 동물의 앞에서, 잔 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

(6) 개입 과정

a. 동물자유연대: 학대자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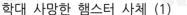
b. 경찰: 현장 출동

(7) 사례종결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 종결

[사진 3] 신사동 햄스터 학대 살해사건 사진







학대 사망한 햄스터 사체 (2)

D. 반려동물 훈련/교육 중 발생한 학대: 훈련사 폭행으로 인한 더치 사망 사건

(1) 피해동물: 반려견 '더치'

(2) 학대 행위자: 훈련소 담당 훈련사

(3) 신고접수

2019년 10월, 반려견 '더치'를 훈련소에 맡긴 반려인이 더치의 안부 확인차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함. 이후 통화 연결을 통해 반려견의 사망을 확인하고 훈련소 방문 후 경찰 신고.

(4) 현장조사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훈련소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하자 "어제 CCTV를 포 맷하여 현재 자료가 없다", "CCTV 암호를 모른다"는 등 변명을 했고,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담당 훈련사가 그제서야 "발, 무릎 등으로 더치를 가격했고, 파이프와 같은 둔기를 사용하여 폭행했으며 더치를 패대기쳤다"고 진술.

(5) 동물학대 사항

학대자의 증언 내용처럼 발, 무릎 등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학대를 행하였고 둔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

- (6) 개입 과정
 - a. 동물자유연대: 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더치 사건 관련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 규 제강화 촉구' 기자회견 진행 및 국민청원 참여 독려
- b. 제보자(더치 반려인):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강화 국민청원 및 동물 학대자(훈련사) 고소
 - (7) 사례종결

2020년 4월 현재 사례 미종결 / 제보자 고발 건 구약식 진행 예정

E. 열악한 사육환경 및 방임/방치 학대: 대구 반야월 할배 사건

(1) 피해동물: 개 9마리

(2) 학대 행위자: 피해동물 보호자

(3) 신고접수

2019년 여름 SNS를 통해 열악한 사육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개들의 모습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며 논란이 됨. 개인 구조 활동가들의 개입으로 대구 동구청에 신고 접수되었고, 동물자유연대에 협조 요청함.

(4) 현장조사



현장 방문 결과 피해동물 보호자는 소위 알박기(땅을 점거하여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목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개 9마리를 방치하여 사육. 사육장 내·외부로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개들은 짧은 목줄로 인해 앉거나 눕지도 못하며 생활. 일부 개체는 목줄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

지자체에 개들의 격리조치를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 등이 격리조치에 대한 내용 숙지가 되지 못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발동되지 못함.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를 통해 결국 격리조치 발 동.

(5) 동물학대 사항

비좁고 심한 악취가 풍기는 열악한 사육환경에 개 9마리를 방치했고 일부 개체는 목줄로 인해 목이 괴사되는 신체적 상해를 입음.

(6) 개입 과정

- a. 동물자유연대: 대구 동구청의 위임으로 2019년 7월 1일 개 9마리 구조 후 위탁처 이동 및 보호 중. 심장사상충 검사 및 접종 진행
- b. 지자체: 현장 방문 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의뢰

(7) 한계점

열악한 사육환경 및 방임/방치 학대의 경우 사건 대응 및 처벌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동물보호 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행위로 인한 피학대 동물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동물 소유권자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시 격리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임 및 방치, 정서적 학대로 인한 동물의 정신적 고통 및 트라우마 등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어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동물이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소유권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대현장에서 동물의 긴급한 격리에 제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방임 및 방치가 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했다는 수의학적 소견이 사건의 수사 및 고발 과정에서 더욱 중요시될 수 있다. 또한방임 및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 상황에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사진 4] 대구 반야월 할배 사건 구조 전후 사진





구조 시







혀재

F. 반려동물 영업 관련 학대: 평택 불법번식장 개 64마리 구조

- (1) 피해동물: 불법번식장 번식견 64마리 (장모치와와, 암·수컷, 2~5살 추정)
 - (2) 학대 행위자: 피해동물 소유자 (불법번식장 운영업자)
 - (3) 신고접수
- 2019년 1월 동물자유연대로 평택 한 주택 내부 개 60여 마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 접수. 제보 사진 확인 결과 마당 및 집 안 모두 배설물 범벅인 상황에 개 60여 마리가 피부병에 걸린 채 방치 돼있었고 구조의 시급성을 인지해 현장 긴급 출동.





(4) 현장조사

골목 어귀부터 악취 진동하는 상황, 마당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개 사체 1구 및 언제 죽은 지 가늠하기 어려운 개 두개골 1구 발견. 모두 성대 수술이 된 총 64마리 장모 치와와 중 일부는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일부는 임신 중인 상태로 말미암아 해당 장소는 불법 가정 동물생산업장으로 추정. 육안 확인 결과 전 개체 모두 전염성 피부질환 감염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고, 일부 개체는 털이 빠져 살갗이 다 드러난 상태. 다리를 절뚝이거나 안구가 손상된 개,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체도 발견.

지자체 전담부서에 현장 출동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 격리조치를 요청했으나 *견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미온적 태도 보임. 지역 경찰의 협조로 적극적 현장조사, 지자체 및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설득을 지속했고 현장 도착 7시간 만에 구조 시작 후 전 개체 동물병원 이동, 사체는 사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5) 동물학대 사항

소유자는 생산업 목적으로 60여 마리 개들을 적절히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5마리가 심상사 상충 감염, 전 개체가 옴, 모낭충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에 노출된 상태. 1마리는 안구 손상 후 적절 한 치료 받지 못해 시력 손실. 1마리는 탈수와 기력 저하로 치료 도중 사망.

학대 행위자는 반려목적으로 개들을 키웠고 본인은 적절한 사육을 했다고 주장.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학대자의 장모 치와와 판매 기록을 발견하며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동물생산업자임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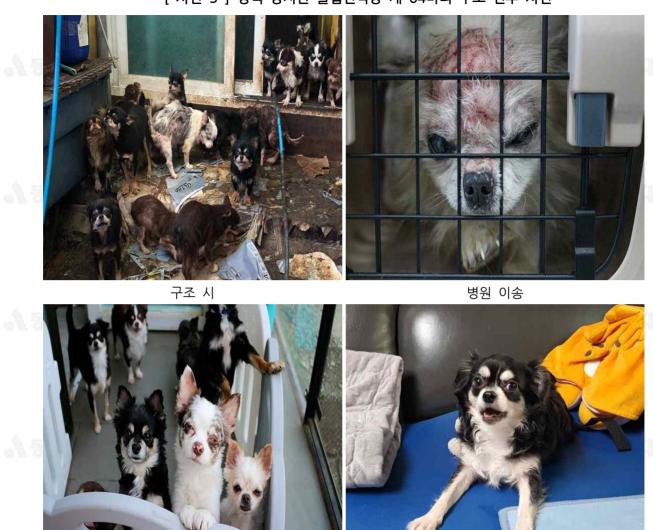
(6) 개입 과정

- a. 동물자유연대: 63마리 구조 및 치료 진행 / 전 개체 반려동물복지센터 입소 / 보호 및 입양 지원
 - b. 지자체: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발동, 불법번식업자 고발 진행

(7) 사례종결

63마리 중 3마리 제외하고 동물자유연대 입양 심사 과정을 거쳐 입양가족 확정. 입양전담 활동가를 통해 1년에 2회 이상 입양동물 근황 파악 중. 3마리 중 2마리는 가정 내 임시보호 중이며 1마리는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에서 영구 보호 중.

[사진 5] 평택 방치된 불법번식장 개 64마리 구조 전후 사진



센터 입소 입양 후

▲ 동골자유연대 ▲ 동골자유연대 ▲ 동골자유연대

▲ 동료자유연대 ▲ 동료자유연대 ▲ 동료자유연대



Ⅲ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의 활용

이번 장에서는 동물학대 대응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 시민,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 동물보 호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사건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단계별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와 사건, 사후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한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모니터링 체계가 동물학대 현장에서 두루 사용되어 우리 사회 위험에 처한 수많은 동 물이 목격자 및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속히 안전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동물학대 대응의 긍정적 사례로 전파될 수 있길 기대한다.

1. 동물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A. 현장 발견 (동물학대 여부 판단)

학대 유형	학대 정황 및 징후	체.	크란
신체적 학대 (살해)	동물의 사체에 상해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동물의 토사물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섞여있다.	예 🗆	아니오 🗆
신체적 학대 (상해) 신체적 학대 (공통)	동물의 신체에 여러 군데의 부상 또는 반복된 부상이 발견된다.	예ㅁ	아니오 🗆
	동물이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하다.	예 🗆	아니오 🗆
	동물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지는 변화 등이 발견된다.	예 🗆	아니오 🗆
	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 대변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예 🗆	아니오 🗆
	극도의 식탐이나 지자치게 배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평소 보호자가 동물에게 과도한 체벌, 훈육을 자주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평소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비명 또는 신음 등의 동물의 소리가 자주 들린다.	예 🗆	아니오 🗆

동됐자유언대 🔥 동됐자유언대

	불충분한 사료와 신선한 식수가 부족하다.	예 🗆	아니오 🗆
₹ 58×	사육공간(시설)이 과도한 밀집 상태이거나 일상적 동작이 불가능한 크기이다.	예 🗆	아니오 🗆
	사육공간(시설)이 더럽고 배설물이 쌓여있다.	예 🗆	아니오 🗆
h en en v	평소 주거지 주변 악취가 심하다.	예 🗆	아니오 🗆
방임/ 방치	날짜와 시간에 적합한 충분하고 적정한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	예 🗆	아니오 🗆
	사육장을 쌓으면 배설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바닥 없는 뜬장 사육 또는 위험한 공간(EX. 사육장의 와이어 돌출 등)에서 생활한다.	예 🗆	아니오 🗆
A SEX	발톱이 길어 살을 파고들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방치가 발생한 다.	예 🗆	아니오 🗆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이 존재한다.	예 🗆	아니오 🗆
A second	동물의 상해, 질병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FOR	항문 또는 회음부 주변에 탈모나 찰과상, 찢어진 상처 등이 있다.	예 🗆	아니오 🗆
성적 학대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겼을 때 과도한 예민 증세나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배뇨 생식기관 내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진료 결과) 재발성 질염 또는 직장염, 비뇨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 다.	예 🗆	아니오 🗆

동물학대 현장에서는 동물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판단해 피학대 동물을 조기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의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제작됐다(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던지기, 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 물리적 학대 및 구타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분야별 1개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동물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로 신고 및 제보를 바란다.







B. 신고 및 제보

번호	항목	체크란
1	제보자 이름, 연락처 정보	
2	동물의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판단 이유와 사람 또는 동물의 상해 여부	
3	정확한 사건 위치: 야외인 경우 주변 건물, 조형물 등	충발자닦면
4	제보 위치에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피학대 동물의 정확한 위치(EX. 동물들은 어디 갇혀있는지)	동물자유연대
6	피학대 동물 외 관련 동물(들)에 대한 설명	
7	학대자(들)의 정확한 위치 및 설명	5-8-T-00([
8	마지막으로 피학대 동물을 본 시점	
9	학대자(들)이 흉기 등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10	피학대 동물을 길가나 창문을 통해 또는 시야에서 볼 수 있는지, 혹은 제보자 의 사유지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동물자유연대
11	학대 또는 방치가 일어났을 때 날씨 상태: 혹한/혹서 여부	
12	추가 증인이 있는지 여부	동물자유연대
13	동물학대 행위 또는 피학대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사진, 동영상 등)	

현장에서의 학대 정황 및 징후를 바탕으로 동물학대가 판단된다면, 해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것이 좋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신고 및 제보는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돕고, 동물의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C. 현장출동 및 대응

(1) 경찰 신고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경찰청(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동물학대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 거나 다음 과정인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지자체 전담 공무원 출동 요청

지자체 전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등 사건 대응 과정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제보자는 경찰 신고 후 관할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출동요청을 하고,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본인의 역할 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제보 후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거나 현장 출입 및 검사, 격리조치 등 적절한 학대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제보 전화를 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

● 동물학대 현장의 출입·검사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등)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기할 수 있다.</u>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

②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제14조(동물의 구조 · 보호) ③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4조제 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3) 현장 확인 및 증거 수집

	번호	항목	체크란
	1	제보자의 이름, 연락처 / 학대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록했다.	
À	2	동물 학대에 대한 제보자, (가능할 경우)학대자의 진술을 기록했다.	동물자유연대
	3	피학대 동물의 상처 양상과 손, 발, 물건 등 가해 도구가 일치한다.	
	4	학대 현장, 환경을 포함한 피학대 동물의 사진, 영상 등(환부 포함/다각도)을 촬영했다.	동품자유연[
	5	장에 폭행에 이용한 도구가 존재할 경우 확보했다.	
	6	피학대 동물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보호자로부터 긴급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1	7	(병원 이송 시) 진료 중인 동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서, 청구서 등을 확보 했다.	동물자유연[
	8	(사인 분석 필요 시) 현장 보존 상태에서 사체를 증거물로 수거해 부검을 의 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학대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목격자 및 학대자의 진술을 받아야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사건 조사 및 후속 연락, 모니 터링을 위하여 기록될 필요가 있다. 동물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라면 동물에게 남겨진 상처 양 상과 손, 발, 물건 등의 가해 도구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피학대 동물 및 학대 현장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시각화 자료를 남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물이 있던 위치와 환경, 학대에 사용된 사물, 학대 피해를 입은 환부 등은 반드시 촬영해두어야 한다.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피해 정도가 심각해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보호 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도 진료 중인 동물의 사진을 촬영하여야하 며, 청구서를 수령해 추후 보호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¹³⁾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체 부검이 필요하다. 해당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검 결과는 경찰 수사 증거가 되므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4)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동물학대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인 '격리조치'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다. 동물의 피해 정도가 심해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보호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이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유자(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 병원 이송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가 발동된다.

동물학대를 신고한 제보자와 사건 목격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격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 극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공무원 또한 학대 현장에서 지체 없이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치 료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학대 동물의 격리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¹⁴⁾ 치료비는 추후 소유자(보호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2. 동물학대 사건 모니터링

A. 경찰 사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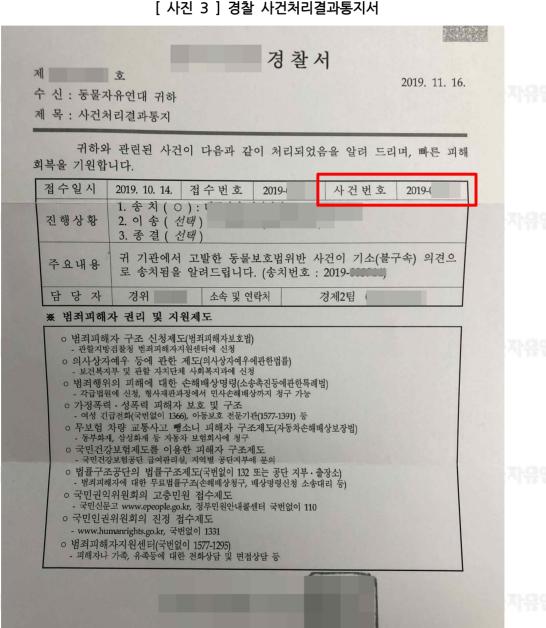
¹³⁾ 동물보호법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¹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 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고소(발)인의 경우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사건 수사 담당 부서와 유 선 또는 면담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보통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경제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나, 각 경찰서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현장에서 담당 예정 부서를 확 인하거나 추후 관할 경찰서 민워실 등을 통해 담당 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되는데, 송치될 때 고소(발)인에게 사건처리결 과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진행 상황 확인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니,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 동물자유연대

B. 검찰 사건조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고소(발)인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검사의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고 보통 2~3일 후 담당 검사명과 검찰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재수신하는데, 보통 검찰 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혹시 사건번호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관할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 4] 검찰사건조회 화면 (형사사법포털-사건조회-검찰사건조회)

정보 기재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이 조회되는데, 사건 진행 상태와 함께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뉜다. 이 때 고소(발)인에게는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사진 5] 고소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검 찰 청 출력일 : 2019년 07월 10일
수신자 사단법인동물자유연대	발신자 검사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 청 2019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면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자명	
수 리 최 명 재물손의 등	처 분 일 자 2019.07.08.
공소시효 만료일	
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재물손피	구약식
동물보호법위반	구약식
by had been ober 1 o'll given have been bet	NAME OF STREET OF STREET
	THE REPORT OF THE PARTY OF
ALTERNATION OF STREET,	TO BE DERIVED AND MADE WATER
THE SAME SAME SAME OF TH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	COMPANY SERVICE AND SERVICE AN
を行う 可能を行うにはあるか 200年 まじた ルタス 近 清度 日本 会社 で 10年 日本 日本 東京 3	MEAN SEE SE PRINCIPLE PRINCE
	THE REAL PROPERTY OF THE PARTY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되고, 추후 법원의 사건번호도 부여된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C. 법원 사건조회

법원도 경찰, 검찰과 같이 사건번호가 별도 부여된다. 기본적으로 '사건접수년도' + '재판종류' + '재판 방식' + '접수순서' + '검색번호'(EX. 2019고단123)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6] 법원사건검색 화면 (대한민국 법원-정보-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학대 상황 종료 후에도 재발방지 등의 차원에서 해당 사건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보자 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사건 진행 과정이나 결과 통보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각 사건 절차의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D. 지자체 사후 모니터링

학대 또는 방치 현장에 동물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지자체 차원의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방임 및 방치 학대로 대표되는 애니멀호딩(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능력 이상으로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의 경우라면 지자체의 사후 모니터링과 개입은 필수적이다.

학대자에게 정신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 구청 담당부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알콜중독 치료 등을 제공을 통해 학대자의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호딩 사건의 경우 환경 개선이 시급한데, 이는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 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해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한 예로 2019년 동물자유연대에 한 지자체로부터 관할 지역 빌라 지하에 한 주민이 40여 마리 개들을 키우며 개체 수 증가, 민원 제기 등으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의봉사활동 단체와 함께 중성화수술 및 예방접종을 지원했으며, 타 단체에서는 동물들의 입양을 지원, 시민 봉사자는 사육 공간의 청소와 동물 돌봄을 담당하여수많은 피학대 동물들이 안전을 찾을 수 있었다.

. 1 등표자유연대

A 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A 두용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u>▲</u> 동문자유연대

· 1 동물자유연대

·1 등표자유연대

·1 동문자유연대

A 통용자유연대

시 등표자왕연대

· 동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 등표자유연대

A FRIARU

A SHIPPH

A 등문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u>▲</u>동물자유연대

... 동품자유연대

A 동물자유연대

. 1 등표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1 동물자유연대

A 등용자유연대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발행일 2020년 6월 5일

발행인 대표 조 희 경

작성자 정 책 팀 장 채 일 택

사회변화팀원 서 미 진

사회변화팀원 김 민 경

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

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홈페이지 www.animals.or.kr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8

이메일 admin@animals.or.kr

A 동광자위인대